

의안 번호	제 16 호
의 결 연 월 일	2012. 12. 12 (제 7 회)

보  
고  
사  
항

2012년도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 
특별전문위원회 운영결과

국가지식재산위원회

제 출 자	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 이광형
제출 연 월 일	2012. 12. 12



## 1. 보고주문

- 「2012년도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결과」를 별지와 같이 보고함

## 2. 보고이유

- 최근 지재권 분쟁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지재권 분쟁해결제도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중요해짐
- 이에 올해 다양한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, 국내 지재권 소송체계를 재검토하여 소송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보고함

## 3. 주요내용

- 특별전문위원회 출범(12.3.7.) 이후 ①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, ②소송대리 전문성 강화의 두 어젠더를 중심으로 논의함
- 그 결과, 특허소송 관할제도의 경우, 특허침해소송 1심은 '서울중앙지법' 및 '대전지법' 전속관할로, 2심은 '특허법원'을 전속관할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함
-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의 경우, 집중적인 추가논의가 필요하여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기간의 연장을 요청키로 함(이에 따라 본 위원회는 당초 '12.11.6. 종료에서 '13.3.6. 종료로 4개월 연장 서면의결 완료)

## 4. 향후계획

- 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사법부·입법부 등과의 협의 노력을 확대하는 한편, 법령 제개정 준비 등 후속조치 추진
-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이슈는 현재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특별전문위원회 연장운영 기간 중 추가 집중논의를 통해 개선안 마련



---

# 2012년도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 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결과

---

2012. 12. 12



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  
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



## I

# 특별전문위원회 운영 경과

-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출범('12.3.7)
  - 유관기관\*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10인의 위원 선정
    - \* 법무부, 특허청, 상공회의소, 지식재산학회, 발명가협회, 변호사협회, 변리사회 등
  
- 특별전문위원회 회의 개최('12.3~12월, 총 9회)
  - (목표) 지재권 분쟁해결제도의 전문성·효율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여, 합목적적이고 실현가능한 최적 대안 도출
  - (범위) 현안 과제인 ①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, ②소송대리 전문성 강화의 두 가지 어젠더를 집중적으로 논의
  - (원칙) 소송당사자(특히 중소기업) 등 국민 편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특허분쟁의 신속한 처리 및 전문성 제고
    - 동시에, 소송경제 및 분쟁해결의 일관성 도모(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), 소송대리의 절차적 적정성과 특허·기술 전문성의 균형과 조화(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)를 원칙으로 논의 진행
  - \* 해외사례·통계·설문조사 등 객관적인 'Fact Finding' 및 대안 분석을 위해 '특허소송 관할집중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' 연구용역 추진('12.4~11월)
  
-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토론회 개최('12.5.30)
  - 일시/장소 : 5.30(수) 13:30~16:40/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
  - 참석 : 과기계, 산업계, 학계, 변호사계, 변리사계 등 180여명
  - 주요 내용 : 주제발표 및 패널발표 후 종합토론 진행
    - \* 한편, 국회 지경위·법사위·교과위 공동 개최한 '지재권 분쟁해결제도 토론회'(11.7.)에도 실무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입법부의 관심 제고를 도모
  
- 특위 운영 관련 사법부와의 정보공유 및 지속적 협의 추진
  - 특위 논의에 대해 법원행정처장(5.14.) 및 실무진(5.1./8.22./11.21.) 등 제도운영 주체인 사법부와 사전협의 지속 진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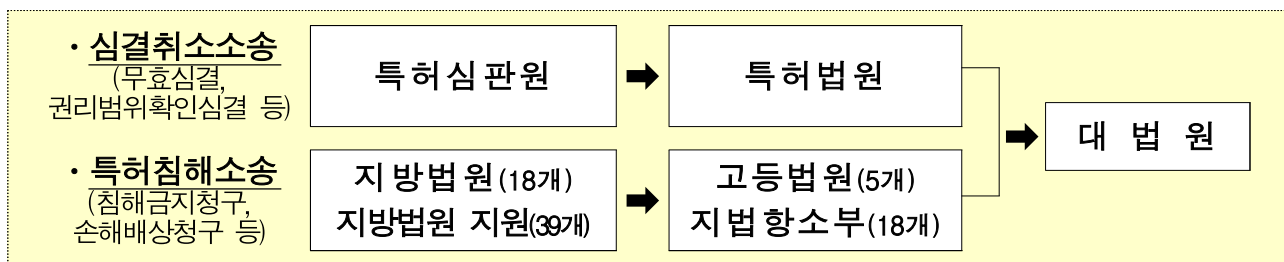
## II

## 개선 방안(안)

### 1. 특허소송 관할제도

##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(현황) 특허 등의 무효여부를 다루는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관할하고, 침해여부를 다루는 특허침해소송은 일반법원이 관할



- (문제점) 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의 관할 이원화로 소송의 전문성·효율성이 저해된다는 기업 및 전문가 등 법조계 안팎의 지적 상존
  - 특허침해소송시 수반되는 특허 무효여부에 대한 판단을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 별도로 담당함에 따라 소송처리 지연
    - \* 김벌리클라크(美) vs. 쌍용제지의 특허침해소송 : 11년 8개월 소요
  - 동일한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과 무효소송의 판단이 상반될 우려
    - \* 특허권침해소송-심결취소소송 연계 비중 : 52%
  - \*\* 최근 대법원은 침해소송에서의 특허 무효여부 판단에 대해 적극적 입장 표명
  -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지방법원에서는 특허침해소송 처리건수가 극히 적어 전문성 및 효율성 축적이 저조하다는 지적
    - \* '10년 특허침해소송 처리: 서울중앙지법 153건, 기타 지법은 1~2건
  - 특허침해소송 관련 대다수의 수요자들이 관할 집중을 희망

< 설문조사결과, 2012.9, 응답자 1,022명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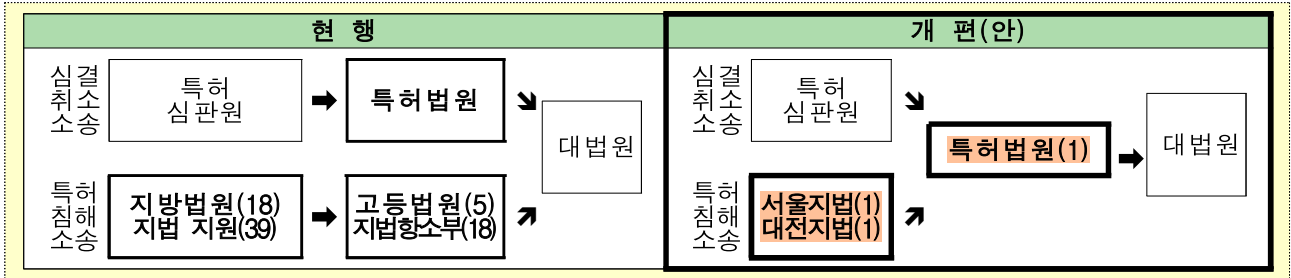
- 사건 경험이 있는 특허 고객의 70%가 법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응답
- 특허침해소송의 관할 집중에 대하여 응답자의 92.1%가 집중이 필요하다고 응답
- 관할 집중 방식에 대하여는 65.1%가 1·2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응답



- 주요 논의 대안 : 거론된 다양한 대안들 중 아래 4개안을 집중 검토
- (1안) 특허침해소송 1심은 ‘서울중앙지법’ 및 ‘대전지방법원’ 전속관할, 2심은 ‘특허법원’ 전속관할로 개편
    - \* (유사 입법례) 일본: 1심은 도쿄·오사카 2개 지방법원으로 집중(2004)하고, 2심은 ‘지적재산고등재판소’를 신설하여 관할집중(2005)
    - 미국: ‘연방순회항소법원(CAFC)’을 설립하여 항소심 관할집중(1982)
    - 특허분쟁의 신속성·전문성 확보에 가장 효과적이며, 판결의 일관성 확보로 기업 경영 리스크 감소에 기여
    - 다만, 침해소송 수요자의 80%가 수도권에 분포하여, 특허법원 소재지인 대전으로의 항소심 집중은 접근성의 저하 지적
  - (2안) 특허침해소송 1·2심 모두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되, 1심의 경우 ‘특허법원 서울분원(부)’를 신설하여 중복관할 허용
    - \* (유사 입법례) EU: 1·2심 모두 ‘유럽통합특허법원’(파리)으로 집중하되, 1심의 경우 두 분원(런던 및 뮌헨 section) 설치 합의(2012)
    - 대만: 1·2심 모두 ‘지식재산전문법원’으로 지재사건 관할 집중(2008)
    - 서울고법 관내 당사자 접근성을 유지하면서도 특허법원 전문성을 활용하여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일관성 제고 가능
    - 반면, ‘특허법원 서울분원(부)’에 1심 사건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 대전 소재 특허법원의 형해화 우려와 심급체계 개편에 따른 부담감 존재
  - (3안) 특허침해소송 1심은 전국지법 및 서울중앙지법 중복관할, 2심은 현행대로 5개 고등법원 및 지법항소부 관할 유지
    - \* (유사 입법례) 독일: 특허권 침해사건은 12개 민사법원이 관할, 특허무효 소송 등 심결취소소송은 연방특허법원이 관할(1961)
    - 1심의 경우 당사자 선택권 보장 및 전문성 보장은 일부 가능하나, 항소심 관할 이원화로 인한 소송 효율성·예측가능성 저하 문제는 미해결
  - (4안) 특허침해소송 1심은 3안과 동일, 2심은 서울고법 집중
    -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집중하여, 판결 전문성 제고에 대한 기대가 있으나 심결취소소송과의 관할 이원화로 인한 소송 효율성·예측가능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

□ 논의 결과 : 특허침해소송 1심은 ‘서울중앙지법’ 및 ‘대전지방법원’ 전속관할로, 2심은 ‘특허법원’ 전속관할로 개편

- \* 현재 특허법원에서 관할 중인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에 대한 소를 포괄 하되, 기타 지재 사건(부정경쟁·영업비밀·저작권 사건 등)의 관할은 상기 법원에 중복관할을 인정



- 서울고법 관할구역 내의 지법 및 지원에 속하는 1심 사건은 ‘서울중앙지법’을, 대전·대구·부산·광주고법 관할구역 내의 지법 및 지원에 속하는 1심 사건은 ‘대전지방법원’을 전속관할로 함

- \* 한편 2심의 경우, 접근성 저하에 대처하기 위해 ‘특허법원 서울부’ 설치 필요성도 논의되었으나, 이는 본 개선방안의 틀 안에서 법원이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(대법원 규칙 개정 등)

➔ 동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조치(민사소송법·법원조직법 등 입법대상 및 방식 포함)는 향후 법무부·법원행정처 등과 협의 추진

□ 기대효과 : 심결취소소송 및 특허침해소송을 동일 관할 하에 판단함으로써 전문성 및 효율성, 일관성이 제고되는 효과

- 세계 주요국은 지재권분쟁의 빈도와 규모 등 시장변화에 부응하여 기업 및 국민 편익을 위해 특허소송의 관할법원을 집중

- \* 설문조사 결과, 전체 응답자의 92.1%가 특허소송 관할집중을 요망

- \*\* <미국> 연방순회항소법원(CAFC) 항소심 관할집중, <일본> 1심은 도쿄·오사카 지방법원 집중, 2심은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집중, <EU> 1·2심 통합특허법원 설립 합의(12629 EU 정상회담 등

➔ 분쟁해결의 신속성·전문성 확보에 가장 효과적이며 판결의 일관성 확보로 기업 경영 리스크를 경감하는 한편, 향후 국제 특허분쟁해결 포럼으로서 우리 법원의 역할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

## 2.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

### □ 현황 및 문제점

○ (현황) 현행 특허침해소송\*은 민사소송으로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으며, 소송사안의 특성\*\*상 대리인의 특허·기술 전문성이 중요

\* 한편, 현재 심결취소소송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

\*\* 특허침해소송시 기술의 실제적 내용 및 기술 관련법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가 당사자 권익 보호에 중요하다는 의견 지속 제기

- 실제 소송과정의 이면에서는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·변리사가 공동 분업구조\*를 형성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

\* 법무법인·특허법인간 업무제휴 및 합병, 법무법인의 변리사 영입 등

- 제도적으로는 전문 변호사의 양성을 위한 로스쿨 제도 도입

- 한편, 그간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부여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, 대안 도출 한계

○ (문제점) 특허분쟁의 양적 증가와 쟁점 기술 등 사안의 복잡화에도 불구하고, 소송대리인의 특허·기술 및 관련법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불충분

- 변리사계, 과학기술계 및 상당수 기업들은 기술전문성 확보를 위해 변리사의 특허소송 참여 필요성을 주장해온 반면, 변호사 등 법조계는 사법체계와의 일관성 및 소송수행 전문성을 이유로 반대하여 평행선

< 설문조사결과, 2012.9, 응답자 1,022명 >

- 현행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60% 이상이 대리인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응답(긍정 응답은 15% 불과)

-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16.7%만이 '변리사 조력없이' 변호사 단독으로 소송 진행 경험

- 한편, 현행 로스쿨 제도는 변호사 시험과목 위주의 교과 운영, 별도의 특허 전문성 시험과정 부재 등으로 전문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

□ 주요 논의 대안 : 아래 4개안을 포함, 다양한 대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

- (1안: 특허변호사 제도 도입) 현행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에 준하는 전문성과 역량을 실체적으로 모두 구비한 '특허변호사' 제도 도입(미국 유사방식, 별도 자격시험 要)
  - 소송과 특허·기술법 전문성 양자를 공적으로 인정받은 대리인에 의해 전문적인 특허소송 법무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고, 로스쿨 도입의 본래적 취지와도 가장 잘 부합
  - 반면, 제도 도입 및 안정적 정착·운영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
- (2안: 변리사 단독대리 허용) 입법을 통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단독대리 허용(유럽통합특허법원('15년 설치예정) 하에서의 European Patent Attorney 제도와 유사)
  - 대리인의 기술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고, 변리사와 변호사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권리보호가 가능하다는 장점
  - 특허 이외의 민사소송에 필요한 광범위한 법률지식과 소송 기법 등 변리사의 소송 전문성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여타 특수소송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우려
- (3안: 변리사 공동대리 허용) 입법을 통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 허용(일본식, <변리사법>개정안(이종혁 의원))
  - 대리인 선정시 소송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특허소송에서의 효율성·전문성 제고 가능
  - 반면 현행 민법상 각자 대리가 원칙이므로 공동대리를 허용할 경우 결국 단독대리 허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법률적 문제가 있고, 소송비전문가 참여로 인한 여타 사법체계와의 일관성 훼손 및 재판의 신속성·적정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 존재
- (4안: 변리사 진술권 부여) 변리사에게 소송 대리권은 허용하지 않으나, 법정 진술권을 부여(독일식)
  - 변리사 법정 진술의 법률적 효력을 법관 재량이 아닌 법규로 공식화함으로써 당사자 권익 구제에 상당 부분 기여 가능
  - 다만, 진술권 운영방식에 따라 당사자 권리보호 보장에 일부 한계

- 논의 방향 : 장기적으로 특허변호사 제도 도입과 함께 중·단기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초기 공감대 형성
- 장기적으로 ‘특허변호사’(미국 유사방식) 제도를 도입하여 자격시험 통과자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부여
  - 소송과 특허·기술법 전문성 양자를 모두 검증할 수 있는 제도로써, 이미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활용 극대화 가능
- 다만, ‘특허변호사’ 제도 도입과 정착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, 중·단기적인 보완책 마련 필요
  - 과도기적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·변리사 공동대리권을 부여(시험·연수 등 자격검증 전제)하거나 변리사의 법정 진술권 인정 등 다양한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 검토
- ➔ 개선방안에 대한 심층적 검토 및 의견수렴과 함께 그간 논의되어온 내용의 집대성을 위해 연장된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기간(당초 ‘12.11.6. 종료 → ‘13.3.6. 종료) 중 추가 집중논의

### Ⅲ

## 향후 계획

- 특별전문위원회 회의 개최(~'13.2)
  -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필요시 수시 개최
  - 소송대리 전문성 개선방안의 경우, 추가집중 논의를 통해 합목적적이고 실현가능한 장·단기 대책 도출에 주력
- 특허소송 관할집중 개선방안에 대해 사법부 및 입법부와 협의를 지속 추진('12.11~'13.2)
-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최종 특위안 안건 상정('13.3)

